

브 리 핑

2024년 2월 21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

[보고 안건]

가. 통신시장조사과

김성환 과장(2110-1420)

조주연 과장(2110-1530)

2024년 제9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 안건]

가. ㈜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

o 일진다이아몬드㈜가 제출한 ㈜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·의결함

[보고 안건]

- 가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에 과항 사항
 -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「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 개정(안)을 보고함
 -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	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
유형 및 기준) 법 제3조제1항에	유형 및 기준)
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	
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	
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	
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	
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	
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	
안하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는 제외한다.	<u>.</u>
<u><신 설></u>	1.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
	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
	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
	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
	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
	<u>원금을 지급하는 경우</u>
1. ~ 3. (생 략)	2 . \sim 4 . (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까
	지와 같음)